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길관리법

주체 112(2023)년 2 월 2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16 호로 채택

주체 113(2024)년 1 월 17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30 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철길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길관리법은 철길의 건설과 보호관리,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철길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 H} 지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철길이란 열차가 다닐수 있게 놓은 로반과 궤도, 철길구조물로 이루어진 길을 말한다.
- 로반이란 궤도를 받들어주는 지반을 말한다.
- 궤도란 레루와 침목, 고착품,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한다.
- 철길구조물이란 철길다리와 차굴, 옹벽과 물길관을 비롯하여 철길을 보호 하거나 유지 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철길의 구분)

철길은 사명에 따라 간선과 지선철길, 전용철길로, 너비에 따라 표준철길과 좁은 철길, 넓은 철길로 나눈다.

우리 나라 철길의 표준너비는 1 435mm 이다.

제 4 조 (철길의 등급)

철길의 등급은 철길의 정치경제적의의와 연간화물수송량, 기술적요구에 따라 1 급, 2 급, 3 급, 4 급으로 한다.

제 5 조 (철길의 현대화원칙)

철길은 철도의 상징이며 나라의 철길을 개명하는것은 철도현대화의 중요한 목표이다.

국가는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철길을 개명하도록 한다.

제 6 조 (철길의 전인민적애호관리원칙)

철길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철길을 아끼고 사랑하며 철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 7 조 (과학연구사업의 강화원칙)

국가는 철도운수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철길건설과 보호관리사업에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 8 조 (철길장비의 생산보장원칙)

철길장비를 충분히 생산보장하는것은 철길건설과 보호사업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철길장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기술적성능이 보장된 중량레루와 콘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 철길건설설비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한다.

제 9 조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철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10 조 (철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철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 기관과 지방인민 위원회가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 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철길 관리사업체 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 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철길판정 검열)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마다 2 차 철길판정검열을 조직하고 나타난 결함들 을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 12 조 (철길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철길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 도운수지 도기 관과 해 당 감독통제기 관은 철 길 건설과 보호관리 , 리 용에 대 한 감독통제 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기관이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철길의 건설

제 14 조 (철길건설의 계획화)

나라의 철길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은 철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철길건설계획의 작성)

철길건설계획은 철길을 새로 놓거나 이미 있는 철길의 기술상태를 개건하려는 경우에 작성 한다.

제 16 조 (철길건설계획의 작성기관)

철길의 신설과 관련한 계획은 중앙계획지도기관이, 철길의 개건과 관련한 계획은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작성한다.

계획작성기관은 철길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철길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7 조 (철길건설계획의 심의)

계획작성기관은 철길건설계획을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계획지도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승인된 철길건설계획을 제때에 철길건설기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길건설설계의 작성)

철길의 신설, 기술개건을 위한 설계는 승인된 철길건설계획에 따라 철도설계 기관이 작성한다.

제 19 조 (설계의 심의)

작성한 철길건설설계는 투자규모와 대상에 따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설계에 기초한 철길건설)

철길건설기업소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철길건설을 할수 없다.

제 21 조 (철 길건설의 담당자)

국가적인 철길건설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철길 건설기업 소와 도철도건설 기업소가 한다.

전용철길건설은 철길을 전용으로 리용하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 22 조 (철길건설 및 시공력량의 강화)

철도운수기관은 나라의 철길건설을 맡아하는 전문철길건설, 시공력량을 꾸리고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 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 도기관, 해당 기관은 철길건설부문에 필요한 노력배치 계획을 년차별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철길건설기업소는 철길다리, 차굴, 물길관을 비롯한 철길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며 로반쌓 기와 다지기, 자갈 및 침목깔기, 레루부설, 고착품설치, 옹벽쌓기, 물도랑만들기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공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24 조 (철길건설장비의 구비)

철길건설기업소는 철길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인 철길건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철길건설기업소가 현대적인 철길건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5 조 (건설대상에 대한 질 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철 길건설에서 공정검 사, 중간검 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검 사, 중간검 사에 서 합격 되 지 못한 경 우 다음단계 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 사에 서 합격되지 못한 철길은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 26 조 (철길장비의 품질검사)

품질감독기관은 레루와 콘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장비는 철길건설 및 보수에 리용할수 없다.

제 3 장 철길의 보호관리

제 27 조 (철길보호관리체계의 수립)

철길의 보호는 철길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 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m! 당 관리제의 원칙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철길관리담당구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 28 조 (철 길상태 의 조사)

철도운수기관은 열차의 안전한 운행에 위험을 조성하는 불비한 철길과 철길 구조물을 제때

에 발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철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철길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해당 지도서에 준하여 철길조사를 진행하며 철길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조사자료의 등록)

철도운수기관은 담당한 철길구간에 대한 조사자료를 철길과 구조물조사등록 대장의 해당한 양식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철길과 구조물조사등록대장의 등록내용과 양식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 30 조 (철길의 기술검사)

철도운수기관은 철길의 기술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보수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기술검사를 조직하며 검사계획을 시기별로 정확히 세우고 담당구간의 철길과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철길의 보수)

철길의 보수는 철길의 정치경제적의의와 연간화물수송량, 레루, 침목을 비롯한 철길장비들의 사용년한, 철길의 평면과 물매상태 등에 따라 대보수와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길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정비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수하여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2 조 (철길의 집중보수)

계절별 철길의 기술상태, 변화상태에 따르는 보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중보수 기간을 정한다.

집중보수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계절별에 따르는 철길집중보수기간에 노력과 자재,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여 철길을 집중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33 조 (철길보수계획의 실행)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철길보수와 관련한 계획화 사업과 그에 따르는 자재보장사업을 바로하여 철길보수를 제때에 원만히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길보수계획을 시달받은 기관, 기업소는 보수를 진행하고 검사에서 합격되는데 따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길보수관리사업에 동원되는 성원들에 대한 로동보수를 정확히 계산 하여 지불해주어야 한다.

제 34 조 (피해복구작업의 의무적동원)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성이상기후와 사고로 인한 철길피해복구작업이 제기되는 경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인원과 자재를 철길복구에 즉시 동원시킬수 있게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 35 조 (철 길순회)

철도운수기관은 철길의 안전성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별로 철길순회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철길순회원은 순회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구간의 철길상태를 확인하고 불비한 점들을 찾아 대책하며 위험성정도에 따라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철길감시)

철도운수기관은 해당 상급기관의 지시와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한 철길감시계획을 작성하여 감시를 진행할 단위들에 내려보내며 감시정 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철길감시방법, 감시정형의 보고)

철길감시는 고정감시와 림시감시의 방법으로 한다.

철길감시원은 담당한 구간의 철길과 구조물의 감시를 책임적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마다 감시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철길보호구역의 설정)

철길의 보호를 위하여 철길로부터 일정한 구간을 철길보호구역으로 한다.

철길보호구역은 철길로반밀 (절토구간에서는 필요한 비탈면의 윗끝) 으로부터 2m, 습지대 에 서는 3m 로 한다.

철길보호구역안의 토지는 철도운수기관이 관리하며 등록된 농업토지는 해당 토지리용기관 이 관리한다.

제 39 조 (철길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철길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2. 철길물도랑이 아닌 물길과 다님길을 내는 행위
3. 나무를 베거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뜯는 행위
4. 흙, 자갈을 파헤치거나 가져가는 행위
5.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불을 놓는 행위
6. 철길과 철길건능길통행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7. 철길에 앉아있거나 철길과 철길보호구역에서 잠을 자는 행위
8. 이밖에 철길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 40 조 (철길주변에 대한 관리)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로반에 꽃관목을, 비탈면

에는 왜싸리나무와 지피식물을 심으며 열차운행과 철도통신선로에 지장을 주는 나무는 제때 에 옮겨심어야 한다.

철길로반과 비탈면은 담당한 철도운수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하며 철길보호구역 밖의 토지와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는 산림관리 기관, 도시 경 영 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제 41 조 (철 길과 구조물보호공사)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과 구조물을 자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길뚝이나 철길다리, 차굴주변의 강기슭, 산비탈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옹벽공사와 사태막이공사, 물빠기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다리밑으로 흐르는 강하천의 관리, 리용 질서를 지켜 철길다리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 조 (철길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관할)

철길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길다리에 안전시설물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기 관은 철 길 다리밑 으로 지 나간 도로에 철 길 다리 한계 문을 비 롯한 안전시 설을 설 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송전선과 배전선, 통신선을 관리,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우로 지나간 송 배 전선이 나 통신선로밑 에 안전그물망을 설 치 하고 관리 하여 야 한다.
4. 지상철길건능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시초소를 건설하며 차단봉과 자동 경보장치를 비롯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철도운수기관은 락석방지를 위하여 철길로반옆 경사면의 균렬된 암반들을 꺼내거나 필 요한 안전대책을 세워 야 한다.

제 43 조 (사고방지대책)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보수관리작업을 할 경우 작업구역의 량쪽방향으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로동안전대책을 세워 사고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 44 조 (철길보호사업의 과학화)

철도운수기관은 철길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인 철길검사측정 수단에 의한 철길과 구조물의 예방보수와 보호관리방법을 개선하며 그 기술상태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 45 조 (철길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상업기관, 경공업기관, 보건기관, 지방인민 위원회, 해당 기관은 철길건설과 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재, 자금, 식량, 기초식품, 일용필수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철길순회원, 감시원을 비롯한 철길관리부문의 종업원들을 철길부문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 46 조 (철도기금의 조성)

철길의 건설과 보호관리를 비롯하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기금을 조성하고 리용한다.

철도기금은 철도부문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쓸수 없다.

제 4 장 철길의 리용

제 47 조 (철길리용대상)

철길로는 철도운수기관이 승인한 철도차량만이 운행할수 있다.

철도차량의 운행은 유일사령지휘에 따른다.

제 48 조 (철길리용의 승인)

철길리용의 승인은 철도수송비를 낸 단위에 한다.

철도수송비납부정 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발급한 철도수송비입금확인서로 확인한다.

제 49 조 (철 길파괴 현상의 미 연방지)

철길을 리용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화물수송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수송과정에 철길과 보호구역을 손상,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0 조 (철길건능길의 건설)

철길 건능길은 립체다리나 지하형식으로 건능길사이 거리가 2km 이상 보장되게 건설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립체다리나 지하형식으로 건설할수 없는 경우 지상 건능길로 건설한다.

철길건능길을 새로 놓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1 조 (건능길감시초소의 설치)

지상철길건능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시초소와 안전시설을 설치 하고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열차와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 인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립시로 지상철길건능길을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사회안전 기관, 도로관리기관의 합의와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능길을 내오고 감시초소와 안전 시설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립시로 승인된 지상철길건능길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철거한 다음 해당 지역 철도운수 기 관과 사회 안전기 관, 도로관리기 관에 알려 야 한다.

제 52 조 (철길표식물)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길의 정해진 곳에 철길표와 신호표, 예고표, 리정표 같은 철길표식물을 설치하여 철길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철길표식 물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승인한 규격대로 만들어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53 조 (철길통행금지)

주민들은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철길로 다니거나 역구내철길에 들어설수 없으며 자동차, 트랙도르, 우마차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철길건늬길이 아닌 곳으로 몰고다닐수 없다.

제 54 조 (철길리용에 지장을 주는 공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길리용에 지장을 주는 림시건물이나 창고, 시설물을 설치 하는것과 같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철도안전기관의 합의와 철도운수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렬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철길안전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55 조 (원상복구, 변상처 벌)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1. 담당한 철길구간을 기술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아 철길을 손상, 파손시켰을 경우
2. 역구내나 도로로 운행하는 료전기재의 짐실이높이를 초과하거나 운전부주의, 고장으로 철길다리, 전차선, 통신선전주, 철길건늬길차단봉과 같은 철도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3. 철길다리밑으로 흐르는 강하천리용을 무질서하게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길

로반과 구조물이 큰물피해를 받게 하였을 경우

제 56 조 (손해보상)

철길불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은 손해보상법에 따른다.

제 57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 만~150 만원, 개별적국민에게 1 000~10 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철길보수계획대로 보수관리를 조직하지 않거나 피해복구에 동원되지 않은 경우
2. 철길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때 차단물이나 서행표식물을 설치 하지
않았 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조성한 경우
3. 철도수송비입 금확인서 가 없거 나 불량한 차량을 운행 시 켜 사고위 험 을 조성
하였거 나 철
길주변을 어지럽히고 구조물을 손상, 파괴한 경우
4.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림시 건늬길을 내오거나 리용하였거나 림시 건늬길을
사용기 간 이 끝나는 즉시 철거하지 않았거나 철거후 철길과 보호구역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5. 철길건늬길이 아닌 곳으로 자동차와 트랙도르, 우마차, 자체로 만든 룬전 기재를
몰고 다닌 경우
6. 철길보호구역에서 부업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방목한 경우
7. 철길로 다니거나 철길에 앉아있는 경우

8. 감시원, 순회원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뜨거나 잠을 자거나 임무수행을 바로 하지 않은 경우

제 58 조 (중지 처벌)

다음의 경우 철길건설, 리용을 중지시킨다.

1. 승인없이 철길을 건설하거나 건설설계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철도수송비입금확인서가 없거나 철길에 손상을 줄수 있는 불량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
3. 자연재해나 사고로 철길이 파괴되었거나 열차운행사고를 일으킬수 있을 정도로 철길상태가 불비한 경우

제 59 조 (몰수처벌)

비법적으로 거두어들인 철길고착품과 승인없이 만들어 리용한 료전기재는 몰수한다.

제 60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철길구조물보강, 철길시설물보호공사, 안전시설물설치,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건능길초소건설과 감시원배치, 건능길안전시설설치,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철길보호구역과 철길로부터 1~2km 안에 철도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건설승인을 하였을 경우
4.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철길보호구역안에 논밭을 일구거나 도로, 물길을 건설하였을 경우
5. 철길검사, 철길보수, 철길감시, 철길순회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6. 철길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61 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다음의 경 우에 는 책 임있는자에 게 3 개 월 이 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을 운영하였을 경우
2. 철길위 험 개소들에 옹벽 공사, 사태 막이공사, 물빠 기공사를 진행 하지 않았거 나 무책 임 하게 하였을 경우
3.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철길을 건설하였거나 철길 건능길을 새로 만들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림시철길건능길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4. 품질 이 담보되지 않은 콘크리 트침 목과 고착품, 레 루를 리 용하였을 경 우
5. 철길건설을 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철길건설과 보호관리사업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룬전기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장비 들을 보장하지 않아 콘크리트침목과 철길고착품생산, 철길건설과 보호관리사업에 지장을 주 었을 경우
7. 철길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철길부문로력을 다른 사업에 동 원시켜 철 길 건설과 보호관리 사업 에 지 장을 주었을 경 우
8. 철길보호 및 리용과 관련한 교양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인명피해사고를 발생 시켰을 경우
9. 철길다리, 차굴로 다니거나 앉아있거나 철길에서 잠을 자는 경우
10. 철길자갈을 파헤친 경우
11. 승인없이 또는 자체로 만든 룬전기재를 운행한 경우
12. 1kg 이하의 철길고착품을 밀매하거나 거두어들인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제 62 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국가의 철길관리부문 정책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63 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6 장 부칙

제 64 조 (시행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30 호 [주체 113(2024)년 1 월 17 일] 로 수정보충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길관리법은 주체 113(202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